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단 비교)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4조(에너지진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2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라 함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티·오·이 이상인 자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06.6.22]</p>	
<p>②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당해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한 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2조의2(에너지진단주기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p> <p>②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티·오·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이하 "부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부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주기 안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1조의2(에너지진단의 제외 대상 사업장)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p> <p>④산업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p>	<p>③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개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한다.</p> <p>[본조신설 2006.6.22]</p> <p>제22조의3(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06.6.22]</p>	<p>[본조신설 2006.7.4]</p> <p>제11조의3(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p>
---	--	---

<p>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p> <p>⑤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⑥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p>	<p>제22조의4(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이</p> <p>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에</p>	<p>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p> <p>2. 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p> <p>②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장의 범위,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06.7.4]</p>
---	---	---

<p>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p> <p>2. 연간에너지사용량이 5천티·오·이 미만일 것</p> <p>②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06.6.22]</p>	
<p>⑦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의5(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본조신설 2006.6.22]</p>	<p>제11조의4(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에너지진단전문</p>

		<p>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p>
--	--	---

<p>⑧에너지진단의 범위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05.12.23]</p> <p>제24조의2(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정하게 에너지진단을 행하는 경우 3.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6.7.4]</p> <p>제11조의5(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6.7.4]</p>
---	--	--

<p>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p> <p>5.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본조신설 2005.12.23]</p> <p>제25조(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개정 1999.1.29, 2005.12.23>) ①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2003.12.30, 2005.12.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 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적 및 당해연도의 계획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p>제12조(에너지사용량신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p>
--	--	--

<p>(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p> <p>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p> <p>③삭제 <2005.12.23></p> <p>제33조(개선명령)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5.12.23></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2></p>	<p>제23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결과 10퍼센트이상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6.30, 2006.6.22></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사항·개선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p> <p>③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기간만료일부터 1</p>	
--	--	--

<p>제7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3.12.30, 2004.12.31, 2005.12.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p>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2006.6.22></p> <p>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6.30></p> <p>[전문개정 1998.2.2]</p> <p>제23조의2(개선명령의 사후관리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6.30></p> <p>[본조신설 1998.2.2]</p>	
---	---	--

<p>자금의 용자 및 지원</p> <p>3의2. 제2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p> <p>4.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 리지도</p> <p>5.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의 촉진</p> <p>6.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교육 및 홍보</p> <p>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 도</p> <p>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 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p> <p>9.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 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p> <p>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 업에 부대되는 사업</p> <p>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기타의 기관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온 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 한 사업</p>		
---	--	--

<p>제88조(교육)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p> <p>②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3.12.30></p> <p>③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12.23></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9.1.29></p> <p>제89조(보고 및 검사 등<개정 2005.12.23>)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p>		<p>제2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04.7.12]</p> <p>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p>
---	--	---

<p>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험기관, 진단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9, 2002.3.25, 2005.12.23></p> <p>②삭제 <1997.8.22></p> <p>③삭제 <1997.8.22></p> <p>④제8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p>		<p>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연도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개선명령 이행실적 <p>②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확보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	--	---

		<p>3.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p> <p>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p> <p>4의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p> <p>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p> <p>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p> <p>6.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p> <p>7.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p> <p>8. 법 제58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등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p>
--	--	--

<p>제9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p> <p>2. 제5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p> <p>[전문개정 2005.12.23]</p> <p>제91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5.12.23></p> <p>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p>		<p>9.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p> <p>10.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p> <p>[전문개정 2002.11.12]</p> <p>제24조(에너지진단 수수료)</p> <p>①진단기관은 법 제90조제1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 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해당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6.7.4]</p>
--	--	---

<p>또는 판매금지명령</p> <p>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p> <p>3.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p> <p>[전문개정 1997.8.22]</p> <p>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p> <p>③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2.3.25, 2005.1.23></p> <p>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p>	<p>제38조의4(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 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0조제3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6.22></p> <p>[본조신설 2003.3.25][제38조의2에서 이동 <2004.6.29>]</p> <p>제39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6.6.22></p> <p>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p> <p>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p> <p>3.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통보의 접</p>	
--	--	--

<p>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p> <p>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p> <p>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p> <p>4의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관리·감독</p> <p>5.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지도</p> <p>6. 제5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p> <p>7. 제59조제3항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p>	<p>수</p> <p>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p> <p>4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p> <p>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p> <p>6. 법 제58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p> <p>7.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한한다)</p> <p>8.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사용중지·설치자 변경에 대한 신고의 접수</p> <p>9.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p> <p>②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p>	
--	--	--

<p>제100조(과태료)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23></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3.25, 2005.12.23></p> <p>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p> <p>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에 위탁한다. <개정 2006.6.22></p> <p>1.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p> <p>2.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한한다)</p> <p>[전문개정 2002.9.26]</p> <p>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2002.9.26></p> <p>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6.30, 2002.9.26></p>	<p>제2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6.7.4]</p>
---	---	--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1999.1.29, 2002.3.25, 2003.12.30, 2005.12.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삭제 <2002.3.25>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 주관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 	<p>③삭제 <2006.6.22></p>	
---	------------------------------	--

<p>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7.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p> <p>8.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자</p> <p>8의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p> <p>9. 제25조제1항·제58조제7항 또는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p> <p>10. 삭제 <2002.3.25></p> <p>11. 삭제 <2002.3.25></p> <p>12.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p> <p>13. 제8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	--	--

<p>1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p>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2005.12.23></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2005.12.23></p> <p>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p>		
--	--	--

<p>정 1997.8.22, 1999.1.29, 2002.3.25, 2005.12.23></p> <p>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3.25, 2005.12.23></p> <p>부칙 <제7745호,2005.12.2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에너지진단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9540호,2006.6.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51호,2006.7.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